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5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## I. 수정이유

-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는 현행과 같이 위원회 운영 규정  
으로 명시함.

## II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회의 비공개 삭제(안 제6조제5항)

## III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~ ④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</u>	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공직자윤리법」 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” 를 “「공직자윤리법」” 으로, “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21조에 따라” 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” 위원회 “라 한다)” 를 ”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“로 한다

제2조제1항 중 ” 위원회 “를 ”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로, “11명” 을 “13명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7명” 을 “9명” 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7명” 을 “9명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대한 등록사항 ” 을 “재산등록사항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” 은 “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” 법 “이라 한다)” 로 “후단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후단에 따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령에 의하여” 를 “법령에 따라” 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공무원 및” 을 “4급 이하 공무원과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 를 “한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통할” 을 “총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 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” 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회의등” 을 “회의 등” 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, “2이상” 을 “2 이상” 으로 한다.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” 을 “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” 으로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” 를 “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” 로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법 제22조에 따른” 으로,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” 를 “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, 제28조의2 및 제29조” 로 한다.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” 을 “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” 으로, “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” 을 “재적위원 수 계산에서” 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6조의3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,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 중 “간사등” 을 “간사 등” 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수당등” 을 “수당 등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 를 “운영에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. 6. 23. 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위원 중 7명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 2명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(기능) ① (생략)</p> <p>1.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공직자윤리법」 -----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----- ----- 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13명 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9명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각 호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9명 ----- ----- 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재산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p> <p>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의2(심사기준)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</p>	<p>-----</p> <p>2.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에 따른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에 따라 -----</p> <p>② ----- --- 4급 이하 공무원과 -----.</p> <p>제3조의2(심사기준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--- ----- 한 차례만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 ----- 총괄-----.</p> <p>②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-----.</p> 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각 호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</p> <p>2.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</p> <p>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</p> <p>4.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</p> <p>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</p> <p>1.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</p> <p>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</p> <p>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>----- 2 이상-----.</p> <p>1. -----에 따른 ----- ---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</p> <p>2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-----</p> <p>3. -----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4. 법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 부터 제28조 까지, 제28조의2 및 제29조-----</p> <p>③ (삭제)</p> <p>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-----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-----.</p> <p>제6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405 1086 549 112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 data-bbox="847 304 1426 398">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416 1426 562">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580 1426 725"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743 1426 1061">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15 1079 1426 1292">제6조의3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847 1310 1426 1404">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1422 1426 1516"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1534 1426 1744">3.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,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1762 1426 1908">4. 제6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 data-bbox="847 1926 1426 2020">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제7조(위원회의 <u>간사등</u> ) (생략)	제7조(위원회의 <u>간사 등</u> ) (현행과 같음)
제8조( <u>수당등</u> ) (생략)	제8조( <u>수당 등</u> )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<u>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	제9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----- ----- <u>에</u> ----- -----.